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 초과 및 증거담보 요청 통지서

(파생상품거래용)

[수신] 대표이사 :

상　　호 :

주　　소 :

참　　조 :　　[담당자 성명 기재]

[　　] (이하"고객"이라 한다)은 주식회사 하나은행 (이하 "은행"이라 한다)과　　년　　월　　일에 체결한 '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 약정서' 및 이후 해당 약정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결한'파생상품 거래 손실한도 변경약정서' 또는 은행이 고객에게 통지한 '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 감액통지서'에 따라 결정된'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'를 다음과 같이 초과하여 증거담보의 제공을 요청합니다.

[통지 내역]

파생상품거래 손실※	원
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	원
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 초과금액	원
기 제공 증거담보 평가액※	원
증거담보 요청금액※	원

※ 파생상품거래 손실 및 기 제공 증거담보 평가액의 상세내역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고객은 상기 증거담보 요청금액을 본 통지서의 수령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당행에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　　월　　일

주 소 :

상 호 : 주식회사 하나은행　　(인)

KEB 하나은행